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4가단506448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민우

변론 종결2024. 9. 5.

판결 선고2024. 10. 24.

주 문

-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소외 D(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0. 4. 2. 접수 제591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은 2018. 10. 10. D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로 인한 대출원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8. 12. 28. D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양수하고, 원고는 2020. 9. 25. F으로부터 D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양수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611960호 양수금 사건으로 소를 제기하여, 2021. 10. 1. 'D은 원고에게 34,756,864원 및 그 중 25,314,164원에 대하여 2021.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양수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한편, D은 2020. 3.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4. 2.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5910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산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F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2020. 9. 25.경 D에 대한 재산소유 내역 등을 포함하여 일체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았을 것이고, 적어도 2022. 9. 21.경 집행문수통부여 신청을 하였을 무렵에는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2024. 2. 13.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제척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주장과 같이 채권추심을 위한 절차들이 진행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었고 그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D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양수금 판결이 2021. 10. 1.에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반면,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20. 3. 17.에 있으므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임이 분명하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F으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거나 이 사건 양수금 판결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F이 D에게 발송한 채권양도 통지서에는 양도인인 E의 위임장이 없으므로 F 및 원고가 발송한 두 건의 채권양도통지서가 D에게 모두 도달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는바(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양수금 판결은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한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그 기판력에

따라 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전소 판결과 달리 판단할 수 없고, 아울러 피고도 위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룰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해행위,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가)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한편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바,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의 자력을 부족하게 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하는 행위여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며, 또한 D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2018. 4. 24.자 140,000,000원, 2018. 10. 22.자 6,6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D이 도박에 빠져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위 대여금을 반환받기 어렵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D으로부터 양수받기로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D의 사해의사, 피고의 악의 추정이 반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 2, 4,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D이 2018. 4. 24.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3억 6,700만 원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가 2018. 4. 24. D에게 1억 4,00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고, D이 이를 위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은 2018년 가을경 피고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이에 따라 D은 2019. 3. 15.경 자신 소유의 주식회사 H의 보통주식 200주를 피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G에게 2019. 12. 17. 3억 원, 2020. 2. 3. 721,052,272원 합계 1,021,052,272원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으로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0. 4. 2. 접수 제59104호로 2018. 4.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곧바로 같은 등기국 2020. 4. 2. 접수 제59105호로 2020. 3.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로부터 대여한 차용금등을 반환하는 것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D은 피고의 자금을 횡령할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였는바, 이러한 상태에서 D의 유일한 적극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D의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자신의 D에 대한 채권을 일부라도 변제받기 위하여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며 스스로 잔여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곧바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바,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약정이 위와 같은 경위로 체결된 대물변제 약정으로 보더라도 이는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재연

별지